공 개

의안번호	제 54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1. 28. (제 2 차)

의결사항

㈜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이 억 원
제출 연월일	2026. 1. 28.

1. 의결주문

㈜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21.11.22.~2021.12.22. 기간 중 실시한 ㈜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가. ㈜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(대표이사 김준영)은 2018.1.2. ~ 2021.9.30.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강교성 등 875명에게 KDB생명보험㈜의 '더알찬 유니버셜종신보험' 등 16,748건의 생명보험계약(초회보험료 2,700.5백만원) 모집과 관련하여 총 4,429.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<붙임 1>

다. 제재내용 공개안 : <붙임 2>

라. 관계부서 협의

- 2025년 제11차 제재심의위원회(2025.7.24.) 심의필
- 2026년 제2차 안건검토 소위원회(2026.1.22.) 심의필

< 별지 >

㈜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1. 조치내용

□ 조치대상 : ㈜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김준영

○ 해임권고

2. 조치사유

가. 수수료 등의 지급금지 위반

□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·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

□ ㈜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(대표이사 김준영)은 2018.1.2. ~ 2021.9.30.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강교성 등 875명에게 KDB생명보험㈜의 '더알찬 유니버셜종신보험' 등 16,748건의 생명보험계약(초회보험료 2,700.5백만원) 모집과 관련하여 총 4,429.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

□ 이는 舊**「보험업법」 제99조 제2항 및 「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」 제25조 제1항 위반***에 해당

*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타인(제3자)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

<관련법규>

- 舊「보험업법」 제99조(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) 제2항
- 「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」 제25조(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금지행위) 제1항 제2호
- 「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」 제52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) 제3항 제2호

< 붙임 1 >

관 계 법 규

□ 舊 보험업법

* 2020. 3. 24. 법률 제17112호로 개정(시행 2021. 3. 25.)되기 이전의 것

제99조(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)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,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·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.

1. 보험설계사: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
2. 보험대리점: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
3. 보험중개사: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

□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

제25조(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금지행위) ①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2.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대리·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·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. 다만,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

제52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) ① 금융위원회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해임요구
2.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
3. 문책경고
4. 주의적 경고
5. 주의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·다목·마목, 같은 조 제7호라목·마목·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2.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·마목, 같은 조 제7호라목·마목·바목에 해당하는

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,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

제18조(임원에 대한 제재) ① 금융위설치법,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해임권고(해임요구, 개선(改選)요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

가. 고의로 중대한 위법·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

제47조의5(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) ① 감독원장은 보험대리점등(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·보험설계사·보험계리사<선임계리사포함> ·보험계리업자·손해사정사· 손해사정업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그 임직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<별표 5>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

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검사운영, 검사결과의 보고, 통보, 조치 및 사후관리, 제재의 가중·감면·병과조치·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, 제3장, 제20조, 제4장 제2절(제27조를 제외한다)·제3절·제4절(제38조를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

□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<별표 5> 보험대리점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

1. 등록취소의 금융위 건의

- 제재사유 : 보험대리점등이 보험업법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
- 제재대상 : 보험대리점, 보험설계사, 보험중개사, 보험계리사, 보험계리업자, 손해사정사, 손해사정업자

2.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의 금융위 건의

- 제재사유 : 보험대리점등이 보험업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(위법·부당 행위의 경중 또는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정지기간은 30일, 60일, 90일 또는 180일로 구분한다.)

- 제재대상 : 보험대리점, 보험설계사, 보험중개사, 보험계리사, 보험계리업자, 손해사정사, 손해사정업자

3. 기타제재

가. 보험대리점・보험중개사에 대하여 그 밖의 제재가 필요한 경우 제17조제1항제3호・4호・제6호・제7호・제9호, 제17조제2항, 제21조제2항의 규정을,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가 필요한 경우 제18조,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나. 보험계리사<선임계리사 포함>・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해임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.

< 붙임 2 >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㈜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

2. 제재조치일 : 2026. . . (검사서 통보일)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보험대리점	업무정지 180일 (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) 과태료 21억 9,270만원 부과
대표이사	해임권고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수수료 등의 지급금지 위반

□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·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

□ ㈜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(대표이사 甲)은 2018.1.2.~2021.9.30.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 등 875명에게 ㉮보험 등 16,748건의 생명보험계약(초회 보험료 2,700.5백만원) 모집과 관련하여 총 4,429.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1. 舊「보험업법」제99조 제2항
2.「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」제25조 제1항 제2호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보험과	금융소비자정책과	보험검사3국
연 락 처	02-2100-2964	02-2100-2631	02-3145-7269